

#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안 번호	289
----------	-----

발의연월일 : 2015. 11. 23.  
발 의 자 : 이용균 의원  
찬 성 자 : 박문수, 강선경, 유인애,  
이백균, 김도연, 구본승,  
김영준 의원

## 1. 제안이유

구민들이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 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6조).
- 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안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2015.11. . ~ 2015.11.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로부터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보(이하 “강북구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구성 사업
2. 강북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강북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자인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자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강북구 관할경찰서, 관할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및 범죄환경 개선지역을 선정하여 강북구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